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1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기웅 · 서명옥 · 고동진
임종득 · 윤용근 · 이만희
박형수 · 강승규 · 윤재옥
박성훈 · 김석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훈계를 하거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교원과 학생의 수업권 및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교권 보호 목적의 일환으로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u> 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3. ----- ----- -----. ----- ----- <u>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u> -----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